

징계부가금 부과 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,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	비위의 정 도가 약하 고 경과실 인 경우
1. 「국가공무원 법」 제78조의2 제 1 항 제 1 호 의 행위	금품비위 금액등의 4 ~ 5배	금품비위 금액등의 3 ~ 4배	금품비위 금액등의 2 ~ 3배	금품비위 금액등의 1 ~ 2배
2. 「국가공무원 법」 제78조의2 제 1 항 제 2 호 의 행위	금품비위 금액등의 3 ~ 5배	금품비위 금액등의 2 ~ 3배	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	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
<p>※ 비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금품비위금액등"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(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말한다.</li> <li>2.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(整數)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li> <li>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.</li> </ol>				